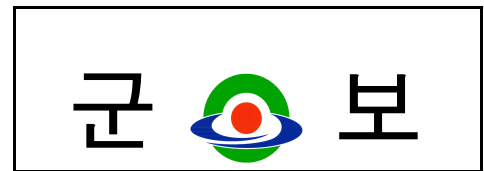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61호 2019. 4. 11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 지형도면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19-20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고시 제 2019 - 20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 지형도면 고시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 년 4월 11일

예 천 군 수

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번호	④ 노선명	⑤ 위치	⑥ 면적 (㎡)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 (km)
신설	군도	24호선	예천~호명	예천읍 청북리~호명면 월포리	110,292	예천읍 청북리 688-14	호명면 월포리 540-1	-	5.72
폐지	구) 지방도	927호선	구)지방도 927호선	호명면 월포리~호명면 금능리	92,494	호명면 월포리 511-4	호명면 금능리 170-7	-	4.26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 사유:

- 지방도 927호선 선형변경 개통에 따른 구 지방도 이관 구간을 군도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- 신설 지방도 927호선 구간에 중복·혼재되어 지정된 구 지방도 도로구역을 폐지하여 사유재산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:

-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:

-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

5. 도면의 열람장소:

- 열람장소 : 예천군 건설교통과

첨부서류

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(열람장소 비치)

